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 (이익몰수)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마약 수익에서 중대범죄로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의 약칭에는 1992년이라는 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의 기원은 1980년대 후반 마약 거래에 맞선 국제적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1988년 비엔나 협약과 1989년 G7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처음에는 마약 거래의 수익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다른 중대범죄의 이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름이 길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의 구조는 지금도 이 역사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쌍을 이루어, 하나는 "마약 거래의 이익"을, 다른 하나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다룹니다.[12]

금융중심지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범주입니다. "범죄행위"란 싱가포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중대범죄 또는 외국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범죄는 제2부속서(Second Schedule)에 열거된 범죄입니다. 외국 중대범죄는 그 기초가 되는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다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중대범죄를 구성했을 외국법상의 범죄입니다.[3] 이 쌍방가벌성 원칙에 따라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저질러진 사기, 부패, 조세범죄로 인한 수익의 세탁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에서 세탁되는 자금은 대부분 바로 그런 해외 범죄에서 나옵니다.

중대범죄의 목록은 국제 기준과 함께 늘어났습니다. 프라이빗 뱅킹에 가장 중요한 확대는 2013년 7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광범위한 중대 조세범죄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되었습니다. 제E편 제II장에서 이 조치와 그것이 신고되지 않은 자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제3부속서(Third Schedule)가 그 자체로 외국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제3부속서는 해외에서 저질러진 중대 환경범죄를 지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경찰은 다른 곳에서의 불법 벌목이나 야생동물 밀거래로부터 나온 싱가포르 내 자금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자금세탁 범죄

핵심 범죄는 section 50부터 54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50과 51은 어떤 약정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범죄 이익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서 그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들은 그 이익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약정도 포괄합니다. section 53과 54는 자신의 범죄 이익을 은닉, 가장, 전환, 이전하거나 관할 밖으로 반출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조항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 그렇게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이 범죄수익임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서 그것을 취득, 보유,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재산의 은닉 또는 가장에는 그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소유관계를 은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5]

이 조항들의 두 가지 특징은 강조할 만합니다. 첫째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알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이라는 문구는 실제 인식을 넘어서므로, 은행원이나 회사 비서는 명백한 경고 신호에 눈을 감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section 53(1)과 54(1)에 자기세탁이 포함되어 있다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점입니다. 자신의 수익을 싱가포르의 계좌를 통해 이동시키는 사기범은 사기 자체와는 별개로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 범죄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전제범죄는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 밖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을 다루는 행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상당합니다. section 51(1) 또는 54(1)~(3)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받습니다. 개인이 아닌 자는 최대 100만 달러 또는 관련 이익 가액의 2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는 중대 사기(scam) 범죄의 수익을 세탁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추가로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을 다룬 사람은 그 재산이 그러한 수익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만 태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주민에게 가장 눈에 띄는 금융범죄인 사기(scam)와의 싸움이 이제 법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2018년에 도입된 또 다른 범죄는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재산을 겨냥합니다. section 55는 범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법원은 외국 정부나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해외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6]

경솔, 과실 그리고 자금 운반책

2020년 이후 온라인 사기의 물결은 법의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사기 수익이 거쳐 간 은행 계좌의 상당수는 해외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팔거나 빌려준 현지 주민들의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 운반책(money mule)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2023년 개정법은 더 낮은 수준의 귀책사유에 대한 범죄를 추가했습니다.[7]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현재 section 51(1A)와 54(3A)는 다른 사람의 범죄 이익을 경솔하게 또는 과실로 용이하게 하거나 다루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경솔한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5년, 과실에 의한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신설된 section 55A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네 가지 상황에서 범죄 이익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가액이 그 사람의 알려진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우나,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합리적 조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급 계좌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그 재산이 범죄 이익에 해당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징역 3년, 법인은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이익의 2배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FATF 평가단은 section 55A(1)을 "자금 운반책 범죄(Money Mule Offence)"라고 불렀습니다. 평가단은 이 조항이 너무 최근에 도입되어 그 실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8] 금융기관에 이 조항은 간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항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개인의 법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고객확인 규칙과 같은 생각에 기반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다루는 사람은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전제범죄와 증명책임

제E편 제VI장에서 살펴볼 2023년 사건은 두 번째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여러 다른 나라의 계좌를 거친 자금을 싱가포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에게 자금세탁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검찰은 그 재산이 실제로 범죄행위의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 피해자와 당국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은 이미 검찰이 전제범죄의 세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재산이 어떤 범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점만 보이면 충분했고, 그것이 어떤 범죄인지 특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9]

2024년 8월 통과된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법(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Matters Act)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ection 56의 신설 조항들은 검찰이 범죄의 객관적 요소로서 그 재산이 실제로 범죄 이익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면 충분합니다.[10] 이 개정으로 자금세탁 기소의 초점은 자금의 출처에서 그 자금을 다루는 사람의 주관적 상태로 옮겨 갑니다. 금융중심지로서는 이 변화가 외국의 협조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의존을 줄여 줍니다. 외국의 협조는 대개 느리고 때로는 아예 없습니다.

몰수, 현금 이동, 정보누설

그 명칭이 보여 주듯이 몰수는 이 법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범죄나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CDSA는 또한 싱가포르로 반입되거나 싱가포르에서 반출되는 현금과 무기명 양도성 증서의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초과분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2만 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입니다. FATF 평가단은 이 제도의 법적 체계는 견고하지만 집행은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 439건 가운데 당국이 더 광범위한 범죄와 연결 지은 범죄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11]

형사 체계의 마지막 요소는 정보누설(tipping-off)의 금지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심거래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가 됩니다. 형벌은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변호사와 고용주에게 조언하는 사내 법률고문은 면제됩니다. 다만 그 공개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프라이빗 뱅크의 고객관리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에게 이 규칙은, 계좌가 보고된 고객에게 그의 지시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s 1(LawPlayer SG가 Singapore Statutes Online에서 전재한 현행 개정판 본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is Act is the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

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Vienna, 1988년 12월 20일; 1989년 7월 파리 G7 정상회의에서의 FATF 창설; 1992년 Drug Trafficking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의 제정과 1999년 다른 중대범죄로의 확대 및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Singapore Statutes Online의 입법 연혁 참조. ↩

3. CDSA, s 2(1), “criminal conduct”, “foreign serious offence” 및 “serious offence”의 정의(LawPlayer SG의 현행 본문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 Consultation Paper to Designate Tax Crimes as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in Singapore* (2013), para. 1.1: 2012년 10월 9일자 협의서는 “the scope of tax crimes that Singapore will be designating as money laundering (‘ML’) predicate offences with effect from 1 July 2013”을 제시함; CDSA, s 2(1), “foreign serious offence”의 정의, para. (b): “includes any offence specified in the Third Schedule” [Act 24 of 2024 wef 14/11/2024](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1: “Introduction of a Third Schedule to the CDSA, designating foreign serious environmental crimes as ML predicate offences.”. ↩

5. CDSA, ss 50(1) 및 51(1)(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다른 사람의 이익의 보유 또는 지배가 “is facilitated (whether by concealment, removal from jurisdiction, transfer to nominees or otherwise)”되는 약정 또는 그 이익이 그 사람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용되는 약정; CDSA, ss 53(1)–(3) 및 54(1)–(3)(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54(4)(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6. CDSA, s 51(5) 및 (7)과 s 54(5) 및 (7)(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51(8)–(10) 및 s 54(8)–(9), Act 21 of 2025에 의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신설(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55(1) 및 (2)(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개인은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 그 밖의 자는 최대 30만 달러의 벌금;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1(이 범죄를 도입한 2018년 개정);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1, "CDSA 2018" 항목. ↩

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1, "CDSA 2023" 항목: "especially in relation to cyber-enabled fraud" 개정으로 "new ML offences including rash and negligent money laundering"을 포함하며, 이는 "would enable LEAs to prosecute persons for a ML offence at lower levels of culpability". ↩

8. CDSA, s 54(3A) 및 (6), Act 15 of 2023에 의해 2024년 2월 8일부터 신설(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경솔한 행위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 과실 행위는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 CDSA, s 55A(1) 및 (2), Act 15 of 2023에 의해 2024년 2월 8일부터 신설(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55A(3)–(6)(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ATF and APG, *Mutual Evaluation Report of Singapore*, 2026년 5월, Executive Summary, para. 32: 일부 대체 조치 "(like CDSA S55A(1), the 'Money Mule Offence') were recently introduced and it is premature to assess effectiveness". ↩

9. CDSA, s 56(1) 및 (2)(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10. CDSA, s 56(5)–(10), Act 24 of 2024에 의해 2024년 11월 14일부터 신설(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 “CDSA 2024” 항목: “It will be sufficient for the Prosecution to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money launderer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he was dealing with criminal proceeds.”;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the passage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Matters Act (AMLOM Act) in August 2024”. ↩

11. CDSA, ss 58, 60(1) 및 64(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ATF and APG, *Mutual Evaluation Report of Singapore*, 2026년 5월, Executive Summary, para. 37; FATF and APG, *Mutual Evaluation Report of Singapore*, 2026년 5월, para. 528: 현금을 국내외로 이동시키는 사람은 “in excess of SGD 20 000”인 경우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함. ↩

12. CDSA, s 57(1) 및 (2)(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57(3)–(5)(LawPlayer SG 전재,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